

## 제 3장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 제3-1조 계약기간

1. 계약의 효력 기간은 개인별장기요양 이용계획서, 장기요양인정서에 명시된 기간이며 계약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계약은 서비스 이용대상자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서비스 이용자 대상자의 의사 표시가 불가할 경우 가족, 친척을 포함한 법적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다.
3. 기관은 이용 대상자(또는 보호자)와 양측이 재계약 포기(거부)의사가 없는 경우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개인별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서의 명시된 기간만큼으로 한다.
4. 계약내용변경사항(계약 기간의 만료, 장기요양 등급 변경) 발생 시에는 이를 반영하여 재계약을 하도록 한다
5.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에 따른 장기요양 급여비용에 변경 또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수가변경계약 또는 재계약을 하거나 기관이 수급자나 보호자에게 변경 내역을 우편, 문자 등으로 전달할 수 있으며 전달 후 7일 이내에 변경된 계약내용에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 제3-2조 계약목적

장기요양급여제공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급여 개시 전 이용자나 보호자와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기관과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 동안 서비스 제공의 관하여 전반적인 책임과 의무를 규정함에 목적이 있다.

### 제3-3조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1. 기관의 월 이용료 및 비용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40조에 따른 본인 일부 부담금과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4조의 비급여비용으로 하며, 비급여비용은 기관이 정한다.
2. 비급여 항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장기요양급여비용산정기준등에 관한 세부사항」에 따른다.
3. 그 밖의 비용부담액(식사재료비 등)은 장기요양급여제공 계약 시 상호 협의하며 이용자의 상태변화 또는 이용자(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재협의하여 변경 할 수 있다.
4. 이용자나 보호자가 개별적으로 요구하는 물품이나 용역일 제공하는 경우 그 비용은 이용자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5. 불가피하게 장기요양급여 한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등급외자의 이용료는 기관에서 정한다.

### 제3-4조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 1. 권리

- 가. 이용자의 건강상태, 신병 이상에 관한 정보를 알 권리
- 나. 이용자와 함께 서비스 급여계획을 결정 내릴 권리
- 다. 서비스 급여계획에 따른 적절한 급여제공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할 권리
- 라. 기관이 실시하는 상담, 욕구사정 등을 통하여 급여제공에 관해 시정을 요구할 권리
- 마. 이용자가 안전하고 청결한 생활환경에서 서비스를 받고 있음을 확인할 권리

#### 2. 의무

- 가. 이용자에게 관한 건강 및 필요한 자료제공 의무
- 나. 이용자의 월 이용료 등 이용비용 부담 의무
- 다. 건강상태 이상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라.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이행이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선정 의무
- 마. 인적사항 및 장기요양보험 등급 변경 시 즉시 기관에 통보할 의무
- 바. 보호자 인적사항 및 연락처 변동 시 즉시 통보할 의무
- 사. 서비스 이용 전 건강상의 이상 증세가 발견될 경우, 담당자의 질문에 성실히 응한다.
- 아. 이용자의 과실로 발생한 시설설비, 비품, 집기 등의 오손, 파손, 멸실에 관한 원상회복 의무

### 제3-5조 계약의 해제

다음 각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해제 시에는 건강보험공단의 자료제출 요구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신원을 공개하지 않는다.

1. 이용자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이용자의 건강에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3.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4. 장기요양보험 등급 외 자로 등급 변경이 발생하였을 때
5. 이용자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6. 기관 내 규칙이나 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센터운영 또는 직원에게 중대한 피해가 발생 되거나 발생 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었을 때

### 제3-6조 이용료 등 수납

1. 장기요양서비스 이용에 따른 이용료는 매년 관계법 및 지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2. 월 이용료의 수납기간은 기관에서 정한 일자까지 납부하도록 한다.
3. 대상자와 계약 해지 시 이용료 잔액이 발생한 경우 현금 또는 계좌입금으로 반환한다.

## 제 4장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제4-1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사항

1.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경우 요양 급여 수가 기준 및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 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4. 변경절차는 계약서(표준약관) 또는 변경계약서에 변경된 사항을 기록하고, 이용자(보호자)와 기관은 각 1부씩 보관한다.

### 제4-2조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

이용료 등 비용에 대한 변경 절차는 아래와 같다

1.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변경된 장기요양인정서,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를 기관에 제출해야한다.
2. 요양급여수가 또는 비급여 비용이 변경된 경우 변경된 내용을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안내하거나 필요시 재계약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3. 계약기간이 만료되었을 때에는 계약기간 만료 전에 이용자 또는 보호자에게 사전 통보한다.